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 2020년 하반기 사업소 -

#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일련번호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개선 요구

제 목 입장료 할인 규정 미비 및 초대권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아래 【표1】 과 같이 2018년~2019년 기획공연·전시 행사를 개최하면서 자체계획에 따라 유료공연에 대해서는 할인사항을 정해서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고 문화소외계층 및 홍보처 등에 대하여는 초대권도 배부하고 있다.

#### 【표1】 생략

### 2. 입장료 할인 규정 미비

#### 가. 관계법령(관련근거)

「지방회계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세외수입 등 포함)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매년 공연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고, 기획공연 및 전시에 따른 입장료 할인 시에는 법령에 관련 근거가 없으면 조례 및 규칙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판단의 기준)

그런데도, ○○○○○○에서는 입장료에 대해서 「경상남도 ○○○○○○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의 관장은 입장권을 발행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입장료 결정, 할인, 무료권 발권 및 배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2000~2000년까지 총 ○○의 기획공연·전시행사 개최하면서 근거 없이 입장료를 결정하여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고 ○○청 및 지역업체 등에 대해 협약체결을 이유로 입장에 대해 아래 【표2】와 같이 할인율을 임의로 적용하여 판매하였다.

### [표2] 생략

## 3. 무료 초대권 관리 소홀

### 가. 관계법령(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규칙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에서는 무료입장권인 초대권도 각 공연 기본계획수립 시 공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초대권 발권대상자를 선정하고 검인대장에 등재 후 초대권발부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판단의 기준)

그런데도, ○○○○○○에서는 2000~2000년 아래 【표3】과 같이 총 ○○건의 기획공연을 개최하면서 라디오 협찬, 홍보처 기관 및 단체 등에 무료초대권을 배부하였음에도 검인하지 않고 대장도 작성하지 않아 초대권에 대한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

### [표3] 생략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기획 공연 및 전시 입장료 할인내용 조례 및 규칙 근거를 마련 시행하고, 무료입장권 발행은 검인 및 무료 입장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에서는 「경상남도 ○○○○○○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입장료 징수 및 할인사항, 무료초대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무료초대권 발급대장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
- ②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개선 요구

제 목 협의회 등 연회비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200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회 등 3개 단체에 【표1】 과 같이 연회비 명목으로 공공운영비에서 ○○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표1】 생략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사.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치된 전국적 협의회, 개별 법령으로 협회비 등 부담금 지원 근거가 명시된 협회에 한해 부담금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표2】 생략

따라서 개별 법령에 의해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단체와 협회에 지

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기관별 업무협조 및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나 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연회비 등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표1】과 같이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국 ○○○○○○회 및 ○○○회, ○○○회 등에 연회비 납부 명목으로 ○년간 ○○○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이는 지난 2000년 종합감사 시에도 부적절한 연회비 납부로 감사지적 되어 현지지정 조치를 처분한 바가 있다.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년 종합감사 지적 이후 한국○○○○○○○회에도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으며, ○○○회비 미납 시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국비 등 지원(연 ○억원) 중단 시 회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하였다.

또한, ○○○은 전국 대부분의 ○○○○○○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다양한 공연 및 공모사업,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비는 ○○○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으로 ○○회의 회원 자격 유지 등에 있어 ○○○비의 예산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피력하

였다. 이어 ○○○비 등 납부에 대한 ○○○○관련 법적, 제도적 정비 및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하고 자체적으로도 이에 대한 방안 강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협회는 19○○년 설립되어 전국 ○○개 단체가 가입되어 매년 ○○○○페스티벌 공동 개최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월 ○○○○단이 창단되어 ○○단의 정보교환과 상호 교류 증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를 납부하였으나, 향후 ○○○설립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남○○○○○○에서는 ○○○○○○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 ○○○○○○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비 등 납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보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개선)

【일련번호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하자 검사 미 실시 및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소홀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공사를 준공한 이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정기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 2. 하자 검사 이행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라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서는 계약금액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각종 공사 준공 이후 담보 책임 존속기간 중에는 하자보수관리부 및 하자검사조서 작성하는 등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라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표1】 과 같이 20○○. ○○. ○○.부터 20○○. ○. ○.까지 준공된 공사 ○○건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또는 최종검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 제○잔교 및 ○○ 보수 정비’ 등 ○건의 공사는 준공 이후 정기 하자검사와 최종검사 모두 실시하지 아니 하였다.

그 결과 최종검사 없이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수책임이 해제되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를 요청할 수 없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 【표1】 생략

### 3.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및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검수일로부터 1년 이상의 담보책임 존속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 계약 체결 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이 아니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표2】와 같이 물품구매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존속기간 중 담보책임을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였어야 했는데도 이행각서만 징구하여 물품 하자보수보증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표2】 생략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 하자검사 실시와 하자보수보증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현 ○○○○) 지방○○○○ ○○○과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 업무를 소  
홀히 한 ○○○○(현 ○○○○) 지방○○○○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며,  
(**훈계**)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적합하게  
하자검사 및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표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다.

#### 【표1】 생략

### 2. 신용카드 대금 연체 및 관리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지출원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발급(해지)시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지출원에게 통보(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지출원이 해당 기관의 모든 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카드 분실 시 해당

카드사에 신속히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킨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 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업무 담당공무원은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까지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 이용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매월 카드사용내역(카드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카드 발급현황을 확인하여 보유카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책임을 명확히 구분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지 않았으며, 분임재무관 또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금청구일 전에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표2】** 와 같이 연체한 사실이 있다.

#### **【표2】 생략**

또한 지출원은 해당기관의 모든 카드 발급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발급대장에는 폐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카드(○○○○)가 금융기관 확인 결과,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등록되어 있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분실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카드 보관책임자 교체 시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분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등 신용카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표3】 생략**

### 3. 현금영수증카드 등록·발급 누락, 사용대장 미작성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 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급량비 증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 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예산을 집행할 경우 먼저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등록하여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매입) 시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에 기록하여 매월 ○○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해야 하고, 급량비 지급 시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매입) 받아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5일 이내에 지출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에서는 신용카드를 감사일 현재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영

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매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보고(결재)하지 않았다. 또한 **【표4】**과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확인하지 않고 급량비를 지급하는 등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표4】 생략**

####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업무환경과 업무연찬 부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과 향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 지방○○○○ ○○○, 지방○○○○ ○○○(현 ○○○○), 지방○○○○ ○○○(현 ○○○○), 지방○○○○ ○○○(현 ○○○○)과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 지방○○○○ ○○○, 지방○○○○ ○○○(현 ○○○○), 지방○○○○ ○○○(현 ○○○○), 지방○○○○ ○○○(현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며, (**훈계**)
- ② ○○○○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사용·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